

# 주식회사 엔에이치제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

## 임시주주총회 의사록

- 일 시 : 2019년 1월 10일 오후 2시
- 장 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, 13층(여의도동,농협재단빌딩) 내 회의실
- 출석주주현황 : 발행주식수 686,288주 중          참석주식수 686,288주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총 주주수 4명 중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참석주주수 4명

주식회사 엔에이치제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(이하 "본 회사"라 한다)의 박영희 의장이 심의에 필요한 의결권을 가진 주주들이 소정의 소집절차에 따라 참석하였음을 확인한 후, 본 주주총회가 상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하였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다.

### 제1호 의안: 주요주주의 특별관계자와의 자산보관 위탁계약 체결 승인의 건

의장은 2018년 12월 13일 체결한 농협은행 주식회사와의 자산보관 위탁계약이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 주식회사의 신주 인수로 인해 주요주주의 특별관계자와의 계약이 됨을 설명하고, 그 가부를 물으니 전원 이의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그를 승인가결하다.

- 아 래 -

### □ 관련 법규

#### ●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30 조(거래의 제한)

-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 21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2.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을 100분의 10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(이하"주요주주"라 한다) 및 그 특별관계자
-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.
  3. 그 밖에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

#### ●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1 조(자산의 투자·운용방법)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·운용하여야 한다.

5. 금융기관에의 예치

● **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 34 조(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)**

① 법 제 30 조제 2 항제 3 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”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.

1.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

□ **결의 내용**

- 2018 년 12 월 13 일 체결한 당사와 농협은행 주식회사 간의 자산보관 위탁계약 체결
- 2019 년 1 월 10 일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 주식회사의 당사 주식 취득(총 발행주식 2,456,288 주 중 570,000 주, 지분율 23.21%)으로 당사의 주요주주가 됨
-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 주식회사와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농협금융지주가 100% 출자한 특별관계자임
- 상기의 거래 관계에 따라 당사와 당사의 주요주주의 특별관계자와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1 조의 금융기관에의 예치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고자 함

의장은 이상으로 금일 의안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(오후 2시 30분)를 선언하다.

위 의사의 결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.

2019년 1월 10일

주식회사 엔에이치제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

의장 및 대표이사 박 영 희

